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200449 유류분반환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1.  
2.  
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4. 5. 13.

판 결 선 고 2014. 6.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73,68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는 25,828,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3.은 21,70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3.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1.은 73,685,820원, 피고 2.는 39,583,514원, 피고 3.은 21,708,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O. OO.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인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다.

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별지 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별지 일람표 '증여일자'·'수증자'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일람표 '시가'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내지 7, 9, 10, 11 내지 16, 제2호증의 4 내지 7, 9 내지 15,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감정인 성○○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과다하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침해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B)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C)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C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 가) 생전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시가는 별지 일람표 '시가'란 기재와 같다.

####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구 달성군 00면 00리 000 토지를 피고 2.가 증여받았다는 주장

한편, 원고는 망인이 대구 달성군 00면 00리 000 임야 000㎡를 피고 2.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적의 8, 을 제2호적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달성군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2.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7호적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복멸시키고 위 각 토지가 망인의 소유로서 망인이 이를 피고 2.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피고 2.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금 7,400,000원을 피고 1.이 증여받았다는 주장

또한 원고들은, 피고 1.이 대구 수성구 O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인 1998. 9. 1.을 전후하여 망인으로부터 현금 7,40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9,809,896원도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창새마을금고, 가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1997. 1. 4.부터 1998. 9. 19.까지 사이에 위 금융기관들에서 총 7,400,000원을 현금을 인출한 사실, 망인의 생전인 1998. 9. 19. 피고 1.의 처인 박OO이 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7,4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106,567,000원을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OO-O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무렵인 1979년경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였던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000 전 0.000㎡의 매각대금 96,567,000원과 한우 2마리 매각대금 10,000,000원을 합한 106,567,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79. 2. 27. 그 소유이던 위 OO리 000 전 0.000㎡를 최OO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의 남편 이OO가 1979. 6. 15.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OO-O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06,567,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000 토지의 지분을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1991. 2. 1.경 망인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000 과수원 0,000㎡ 중 999분의 499 지분(이하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의 2012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59,376,000원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과수원 지분에 관하여 2007. 4.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2, 제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2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은 원고의 남편인 이OO가 원고의 시아버지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시아버지 이△△은 1974년경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을 매수하면서 손자인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그 후 이△△은 위 과수원 지분을 원고의 남편 이OO에게 증여하였는데, 이OO는 등기관계상 원고의 동생인 피고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③ 원고는 2007. 4. 18. 피고 2.로부터 1991.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과수원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합계액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2,113,779원이다.

3) 원고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총액에다가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한 액수인바,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을 원고, 피고들, 소외인이 1:1:1:1:1의 비율로 상속받았으므로, 법정상속분은 각 1/5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율은 1/10(= 1/5 × 1/2)이 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유류분액은 123,211,377원(= 1,232,113,779원(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 1/10(유류분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한편,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없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23,211,377원이다.

4)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증액 산정

가) 피고 1.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1.의 경우 초과 수증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자신의 유류분액을 공제한 금액인바, 아래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1.의 초과 수증액은 517,831,000원이다.

①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641,042,377원 = 171,510,510원(별지 일람표 순번 1 부동산 가액)+ 198,894,540원(별지 일람표 순번 2 부동산 가액 + 270,637,327원(= 371,246,000원(별지 일람표 순번 7 부동산 가액) × 피고 1. 소유인 269/369 지분) ② 피고 1.의 유류분액 : 123,211,377원 ③ 피고 1.의 초과 수증액 : 517,831,000원(= 641,042,377원 - 123,211,377원)
--

나) 피고 2.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2.의 경우에도 초과 수증액이 발생하는데, 아래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2.의 초과 수증액은 180,801,725원이다.

① 피고 2.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304,013,102원  
 = 82,406,400원(별지 일람표 순번 3 부동산 가액)+ 5,688,000원(별지 일람표 순번 4 부동산 가액) + 74,883,000원(별지 일람표 순번 5 부동산 가액) + 40,427,030원(별지 일람표 순번 6 부동산 가액) + 100,608,672원(= 371,246,000원(별지 일람표 순번 7 부동산 가액) × 피고 2. 소유인 100/369 지분)  
 ② 피고 2.의 유류분액 : 123,211,377원  
 ③ 피고 2.의 초과 수증액 : 180,801,725원(= 304,013,102원 - 123,211,377원)

다) 피고 3.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3.의 경우에도 초과 수증액이 발생하는데, 아래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3.의 초과 수증액은 163,846,923원이다.

① 피고 3.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287,058,300원  
 = 72,395,300원(별지 일람표 순번 8 부동산 가액) + 77,918,400원(별지 일람표 순번 9 부동산 가액) + 55,477,800원(별지 일람표 순번 10 부동산 가액) + 81,266,800원(별지 일람표 순번 11 부동산 가액)  
 ② 피고 3.의 유류분액 : 123,211,377원  
 ③ 피고 3.의 초과 수증액 : 163,846,923원(= 287,058,300원 - 123,211,377원)

5)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피고들의 각 초과 수증액을 곱한 다음 피고들 전체의 초과 수증액을 나눈 금액이다.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피고 1.: 73,975,856원(= 123,211,377원(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517,831,000원(피고 1.의 초과 수증액) ÷ 862,479,648원(피고들의 초과 수증액 합계))  
 ② 피고 2.: 25,828,817원(= 123,211,377원(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180,801,725원(피고 2.의 초과 수증액) ÷ 862,479,648원(피고들의 초과 수증액 합계))  
 ③ 피고 3.: 23,406,703원(= 123,211,377원(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163,846,923원(피고 3.의 초과 수증액) ÷ 862,479,648원(피고들의 초과 수증액 합계))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73,975,85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685,820원, 피고 2.는 25,828,817원, 피고 3.은 23,406,70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708,830원을 각 유류분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1.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685,82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2.는 25,828,817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3.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708,83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

음날인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상속재산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1.은 1993년경 망인이 거주하던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620-2 소재 주택개량공사와 관련하여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 1.은 모인 김필늬의 병간호비로 47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 1.은 망인의 치료비로 약 1,150만 원(또는 1,600만 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 1.은 모인 김필늬의 장례비로 1,000만 원, 제사비용으로 1,800만 원을, 망인의 장례비로 2,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5) 피고 1.은 1998. 1. 망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9,537,300원을 지출하였고,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보험료로 4,709,380원을 지출하였다.

6) 피고 1.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망인의 생활비로 매월 20만 원씩 9년간 총 19,590,000원을 지출하였다.

####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4호증의 2, 제15, 16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 19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정승혜
	판사	오범석

별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순번	부동산의 표시	증여일자	수증자	시가(원)
1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O 답 0,000㎡ 중 1,049/2,126지분	1995. 3. 11.	피고 1.	171,510,510
2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O 답 0,000㎡ 중 1,049/2,126지분	1995. 3. 11.	피고 1.	198,894,540
3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과수원 000㎡	1990. 3. 9.	피고 2.	82,406,400
4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O 도로 000㎡	1990. 3. 9.	피고 2.	5,688,000
5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답 000㎡	1990. 3. 9.	피고 2.	74,883,000
6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O 답 0,000㎡ 중 613/1227지분	1990. 3. 9.	피고 2.	40,427,030
7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O 대 0,000㎡	1997. 12. 26.	피고 1. (269/369지분)	270,637,327
			피고 2. (100/369지분)	100,608,672
8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답 000㎡	1997. 12. 26.	피고 3.	72,395,300
9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전 0,000㎡	1997. 12. 26.	피고 3.	77,918,400
10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전 000㎡	1997. 12. 26.	피고 3.	55,477,800
11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OOO 임야 000㎡	1997. 12. 26.	피고 3.	81,266,800
합계				1,232,113,779